



대구대학교 – 대구가정법원

협약서



대구가정법원

대구대학교와 대구가정법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법률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대구 경북지역사회의 전문인력 양성과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법률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우호와 학술적 교류를 증진 하며 대구 경북지역사회의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하고 상호의 규정을 존중하며,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력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관하여 협력한다.

1. 법률 및 사회복지 관련 학문과 실무에 대한 공동 연구
2.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원 공유
3. 전문분야 학생 실무수습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
4. 채용 정보의 제공
5. 법률문화의 발전 및 사회복지 기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상호 전문 인력의 교류
6. 사회 공헌 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협력

제4조(협의 및 인적교류) ①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 양 기관은 상호 인적 교류, 주요 판결과 법학 관련 논문 등 실무경험과 연구성과의 융합을 통해 법학교육의 충실화와 지역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5조(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 공유되는 비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다.

제6조(발효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 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어느 당사자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0월 30일

대구대학교

총장 박순진

박순진

대구가정법원

법원장 김형태

김형태